

고 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 - 191호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(신탁업자)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재건축정비사업
 - 나. 명 칭 :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 - 192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

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 처분내용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법인 명칭 : (주)무궁화신탁
 - 나. 법인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
 - 다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최병길, 권준명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
 - 나. 면 적 : 14,656.0㎡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- 가. 착수예정일 : 2024년 02월
 - 나. 준공예정일 : 2026년 08월

- 실내*, 실외*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- 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- 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- ** 실외 :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
3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~4호

4. 처분사유 : 서울시 관악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,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5. 처분기간 : 2020. 10. 31.(토) ~ 별도명령 시 까지
※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2020. 10. 31.(토) ~ 11. 12.(목)

6.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과태료 부과권자 : 관악구청장

다. 단속내용 : 허가된 마스크*로, 올바르게 착용했는지**

- *허가된 마스크 :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**올바르게 착용했는지 :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

라.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1)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‘만 14세 미만자’ 및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’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2)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
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촬영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마. 단속방법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※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바. 부과금액 :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0. 31.(토) 0시 부터

8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